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공용연구시설에서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진단·치료제, 백신 등 기초연구 및 전임상 시험 실증]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대전테크노파크원장

□ 모집 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를 추가로 발굴·지원을 통한 특구활성화 및 지역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멘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속확인 (법 제8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사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 (법 제86조 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사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p>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p>
임시허가	<p>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사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p> <p>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p>

□ 특구 개요

- 특 구 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특구사업자 선정시부터 ~ 2024.12.31.까지
- 지정구역 : 대전TP, 충남대학교병원 등 3개 병원, (주)진시스템 등 14社
- 사업내용

실증사업명	사업자	내용	규제조항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치료제 조기 상용화	대전 테크노파크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 허가 및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연구시설 공동관리위원회, 신약연구지원협의회, 전임상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기업의 전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 제출지원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제22조의 2
	충남대학교병원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설치 · 운영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체자원 수집 · 관리 · 분양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설치 · 운영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병원체자원 수집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체자원 수집 · 관리 · 분양 	
	간암대학교병원		
	기업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체자원의 신속한 확보 ▣ 공용연구시설에서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진단 · 치료제, 백신 등 기초연구 및 전임상 시험 실증 ▣ 고위험병원체의 관리 · 활용에 적합한 인력 지정 및 안전교육과 법정교육 이수 	

□ 모집 내용

- 모집대상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관련분야 : 고위험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치료제·백신·진단기기 분야
- 신청자격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사전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8.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세부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을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신청한 규제특례 부여

※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연구시설활용 등 연계 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 특구 내 소재한 기업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18일(수) ~ 11월 9일(목), 18:00

- 제출처 및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바이오기획팀

- 김영애 책임, yakim@djtp.or.kr, 042-930-4719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1. 특구 참여 의향서 및 보안각서 1부(양식 의거 작성 제출) 2. 사업자(공장) 등록증(사본) 1부 3. 최근 3년('20년 ~ '22년) 결산재무제표 1부 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5. 규제자유특구 신규참여 신청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해당시 제출	1.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사본) 2. 제품, 기술 홍보자료(카달로그, 브로셔 등)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 특구 참여 의향서(양식)1부. 끝.

양식 1 특구 참여 의향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특구확정 후 별도의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여 사업기간 동안 공동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실증사업 후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본정보

특 구 명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특구위치	대전광역시 테크노밸리 일원(특구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사업기간	특구사업자 선정시부터 ~ 2024. 12. 31.까지	
세부 사업	사업 내용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 실증 ▶ 공용연구시설에서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진단·치료제, 백신 등 기초연구 및 전임상 시험 실증 ▶ 고위험병원체의 관리·활용에 적합한 인력 지정 및 안전교육과 법정교육 이수	신청희망 사업 해당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참여 희망기업 확인사항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진행 중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을 중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안전복구를 위해 노력을 한다.
- 대전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신규 특구례지정)을 통해 혜택을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사업적 이슈는 기존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진다.

양후 투자계획

기업명	투자규모	검토지역	투자기간

※ 사업장 이전 및 개설, 연구개발, 채용 등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산출 규모(복수응답 가능)

[별첨]

-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 규제자유특구 신규참여 신청서 1부
- 보완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2023년 월 일

(기업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인)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참조1]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요약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요약	
배경 및 필요성	<p>바이오의약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조기진입을 위해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기초연구와 전임상시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관련시설 부족으로 진입이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체자원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이 없이 병원체자원의 분양*을 통한 치료제, 백신 등의 개발이 불가능 <p>*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BL(Biosafety level) 3등급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거절(병원체자원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p>
목적	신약 개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공용연구시설(共用研究施設,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치료제, 백신 등 연구개발 및 전임상시험 지원
위치 · 면적	대전TP, 충남대학교병원 등 3개 병원, (주)진시스템 등 14社 414.35km ²
사업기간	2021.1 ~2024.12(4년)
사업자	(기관) 대전TP (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기업) 안지오랩, 진시스템, 진켐, 파멥신, 써나젠테라퓨틱스, 바이오오케스트라, 앤드관네츄럴사이언스, 파이어니어백신, 사이키바이오텍, 리제너스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약183.4억원 (24개월, 국비+지방비+민자) - 공용연구시설(전액 지방비) 및 관련 장비 구축, 운영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연구시설 구축) 중소·벤처기업들이 활용 가능한『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특구사업자 참여 병원에 설치하여 연구원, 의사, 교수 등이 진단·치료제, 백신 등 기초연구 및 전임상시험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 (연구개발 및 전임상시험) 병원체 취급시설·장비·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인『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의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 신약 개발 등의 기초연구 및 전임상시험 실증추진 <p>※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병원체자원 취급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병원)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분양, 공용연구시설 설치·운영, 전임상 시험법 개발 및 신약 효능과 안전성 탐색 코칭,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전임상시험 실증 지원 - (대전 TP)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활용과 관련된 기업의 전임상시험 연계 지원 - (기업) 병원체자원의 신속한 확보, 공용연구시설에서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진단·치료제, 백신 등의 기초연구와 전임상시험 실증으로 개발 신약 등의 조기 임상시험 실증 단계 진입

[별첨1]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우)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input type="checkbox"/> 개인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 수행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P&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특허 및 보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 보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 ○ 특례 및 사업(P&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별첨2] 규제자유특구 신규참여 신청서

규제자유특구 신규참여 신청서

1. 제품 ·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가. 제품 · 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input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품(서비스) 개요	<p>※ 제품·서비스의 용도 및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2~3줄 작성)</p> <p>※ 제품(서비스) 사진 또는 이미지 삽입</p>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해당 제품 ·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p>※ 신청계획서 내 신청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술</p>

관련법규	<p>①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신청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특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신청 허용 <p>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기간 단축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2조 특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30일 이내)
------	---

다. 제품 · 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p>※ 관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하여 기술</p> <p>※ 국내·외 관련 제품(서비스)의 개발 현황 및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에 대해 기술</p>
----------------	---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징(차별화된 요소 등) 및 용도에 대해 기술 ※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성 및 지표 등에 대해 기술 ※ 기존 제품(또는 경쟁제품)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가격대비 품질, 성능, 서비스, 혜택)을 중심으로 기술(사진, 이미지, 도표 등 포함)
제품(서비스) 관련 자식재산권 보유현황	<p><input type="checkbox"/> 특허등록()건 <input type="checkbox"/> 특허출원()건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건 <input type="checkbox"/> 의장()건 <input type="checkbox"/> 상표()건</p> <p><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건 <input type="checkbox"/> GS()건 <input type="checkbox"/> 인증()건 <input type="checkbox"/> NET()건 <input type="checkbox"/> NEP()건</p> <p>명칭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항은 해당 항목과 관련된 최근 5년 이내 보유현황을 작성 ※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
유사 제품 (기업)현황	<p><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p> <p>(기업 또는 제품명 :)</p>

라. 제품 · 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뛰어난 편의 등을 기술 ※ 소비자는 사회적(공공)측면,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소비자들로 하여금 본 제품·서비스의 수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기술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성 목표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 ※ 해당시장이나 연관시장(산업)의 시장규모 변화 및 기대되는 신시장(사업) 규모 등 기술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제안한 제품 ·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어 중심으로 기술
- 실증특례 신청사유에 대하여 사업추진 저해 규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려 시장규모와 성장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유사 제품/서비스 사례에 대하여 기술
- 본 제품 · 서비스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기술

※ 1.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는 휴면명조, 출간격 160으로 3~5페이지 분량으로 기술할 것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실증특례명			
실증 구역		지정 기간	지정 시 ~ 2024. 12. 31.

가. 목적 및 개요

실증특례 목적	※ 수요처가 이해가능하도록 실증을 하려는 산업 또는 관련 분야의 개선 필요사항, 실증사업 수행을 통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작성
실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대상 기술의 완성도(보유기술 및 제품 등 준비 현황)를 포함하여 작성 ※ 실증사업에 포함되는 주요기술 단위별 작성

나. 시험·검증 방법

실증 항목 및 내용						
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검증의 방법을 일련의 시나리오 형태로 기술 ※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후 최종목표 달성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량화 혹은 정성화된 목표치 기술 					
세부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을 위한 준비내용 및 일정 					
실증결과 보고계획						
실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 실시체계 및 실증운영/관리 방안 등 ※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와의 조정상황 등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실증 종료시점 달성을하고자 하는 목표(제품, 기술 등) 및 그와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평가방법 및 실증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실증특례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 또는 제품의 성능개선 여부 등 작성
 - 성능에 대한 평가방법 및 항목(핵심기술/주요성능지표)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는 휴먼명조, 줄간격 160으로 최대 3페이지 분량으로 기술할 것

[별첨3]

보 안 각 서

1. 본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 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대전광역시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소 속 기 관 :

성 명 : (인)

[별첨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대전광역시의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 . .

소속기관 :

대 표 자 : (인)